

대전지방법원 2016. 11. 30 선고 2016가단20260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6. 10. 26.

판결 선고2016. 11. 30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,648,614원 및 그 중 91,533,964원에 대하여 2015. 10. 6.부터 2016. 1. 3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2016. 3. 27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, 피고 B 사이에 생긴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5. 4. 27.

체결한 증여계약은 25,938,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는 원고에게 25,938,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

1) 원고는 2013. 9. 6.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9,000만원, 보증기한 2014. 9. 5.까지(그 후 2015. 9. 4.로 변경되었다)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.

2)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,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,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법적절차 비용, 미납한 보증료, 연체보증료,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대위변제

1) 피고 회사가 2015. 3. 17. 국세를 체납하는 등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,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. 10. 6.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91,533,964원(= 원금 90,000,000원 + 이자 1,533,964원)을 대위변제하였고, 추가보증료 114,650원이 발생하였다.

2)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6. 1. 31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0%이다.

다. 부동산의 처분 및 무자력

1) 피고 B은 그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 관하여

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5. 4. 28. 접수 제8895호로 2015. 4. 27.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2) 피고 C는 2015. 8. 28.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. 8. 1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3)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상태에 있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다 제3,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증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, 피고 회사,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91,648,614원(= 대위변제금 91,533,964원 + 추가보증료 114,65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,533,9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. 10. 6.부터 2016. 1. 31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. 3. 27.까지는 연 1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한편 수익자인 피고 C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사해행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전득자인 D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,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실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 C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(한성저축은행 140,000,000원, E 40,000,000원) 및 담보가등기

피담보채무(20,000,000원)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1)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,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,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(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),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이미 발생해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다.

2) 인정사실 가)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 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85,000,000원이다.

나)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내역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

○ 2012. 4. 23.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75,500,000원, 채무자 피고 B, 근저당권자 한성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

○ 2012. 4. 25.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B,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

○ 2014. 12. 1.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 F으로 된 가등기

다) 한편 위 각 근저당권 및 가등기 경료일 무렵과 그 이후에 근저당권자 및 가등기권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 및 금원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○ 피고 B은 2012. 4. 23. 한성저축은행과 사이에 일반자금 대출과목으로 대출금액 125,000,000원, 대출금액 10,000,000원 2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35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그 외에도 같은 날 한도금액 5,000,000원으로 한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하였다).

○ E은 피고 B에게 2012. 4. 24. 20,000,000원, 2012. 5. 11. 10,000,000원, 2012. 10. 26. 10,000,000원을 각 송금하였다(그 외에도 2012. 12. 21. 3,816,000원을 송금하였다).

○ F은 2014. 12. 1. 피고 B에게 18,6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라) 한편 D은 2015. 8. 19.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85,000,000원에

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, 계약금 1,000,000원을 제외한 잔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위 금원이 아래 내역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.

○ 2015. 8. 27. 피고 B의 한성저축은행 계좌로 138,647,549원을 송금하여 위 다.항 기재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데, 129,061,380원은 대출금액 125,000,000원의 대출원금 125,000,000원 및 그 이자 등으로 사용되고, 4,442,567원은 대출금액 10,000,000원의 대출원금 4,310,891원 및 그 이자 등으로 사용되고, 나머지는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.

○ 2015. 8. 27. E이 지정한 G 계좌로 41,000,000원 송금

○ 2015. 8. 27. F 계좌로 4,292,451원 송금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9호증, 을다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, 변론 전체의 취지

3) 판단 가) 우선 위 가등기의 담보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가등기 무렵 가등기권자인 F이 피고 B에게 18,600,000원을 송금하였는바, 이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.

나) 다음으로 원고는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2012. 4. 23. 대출금액 10,000,000원의 대출금이 위 해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, 을다 제8,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성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, 위 대출금 또한 위 해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사실이 인정되고, 을다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다) 다음으로 원고는 E에 대한 2012. 10. 26. 10,000,000원 차용금이 위 해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0,000,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해당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 채무 20,000,000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립한 2012. 10. 26. 10,000,000원 차용금 또한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
라)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9,442,567원(=

125,000,000원 + 4,442,567원), E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0,000,000원, F의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 18,600,000원 합계 188,042,567원(= 129,442,567원 + 40,000,000원 + 18,600,000원)으로,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(185,000,000원)을 초과하는바,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회사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우정

별지